



## 산업안전



1Km 교량 토목현장에서 개인차량을 현장안전관리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한 유류와 간단한 수리비 정도는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기준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 2001-22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임)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저희는 2001년 2월에 설립된 제조 및 도소매 신규 업체입니다. 업체에서는 일년에 한번 직원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도 건강검진을 받고 노동부에 보고를 해야하는지 여부와 해야한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 상근근로자 5인이상(2002.1.1 이후 1인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채용후에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강진단은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기 이전 또는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한 시기에 건강장애나 질병을 발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로 그 실시 목적에 따라 의학적 선별검사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 부서에 배치하기 전에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후 사무직 종사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이상 주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됨)

채용시 건강진단 및 일반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면 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측벽 낙하물 방지망 설치에 있어서 G.L에서 부터 3층 높이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고 그 위로는 갱폼으로 작업진행을 할 계획인데 최하부 1단설치로 측벽 낙하물 방지망설치가 법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낙하물 방지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작업장의 바닥, 도로 또는 통로 등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나,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때에 설치하는 방호철망이나 안전망, 방망 등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특정한 공법에 의하여 그 설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갯폼공법 또는 비계공법 등 시공방법과는 상관없이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중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1. 당해공사의 입찰전 설계금액이 800억원 이상이고, 입찰후 도급금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시 몇 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요?
2.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시 800억원이상 공사는 2인, 150억원이상 800억원 미만공사는 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는데, 실제 선임인원을 800억원이상 공사에서 3인을, 150억원이상 800억원미만 공사에서 2인을 노동부에 선임신고한 경우 초과 선임된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요

1)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낙찰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을 기준으로 함.

2)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의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800억원 이상 공사시 2인(700억원 추가될 때마다 1인 추가), 120억원(토목공사시 150억원)이상 800억원 미만 공사시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여 노동부에 초과 선임 신고한 안전관리자의 경우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



〈근로자 건강진단 안내문〉에서 사업주 벌칙 조항 중,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건강진단 실시결과 당해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 의사가 소견으로 제시한 사후관리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법 제69조 제2호, 법 제43조 제5항)” 항목에서, ‘건강진단 실시 결과’란 일반검진을 의미하는지, 특수검진만을 의미하는지, 모두 포함을 하는지요
2. 사업주가 의사 소견에 따라 근로자의 사후관리조치를 실시해 주어야 하는 검진 결과에서 일반검진에 의한 질환별 근로자 사후관리 의사 소견은 사업주의 사후관리 책임 사항이 아닌지요

1. 노동부에서 제작·배포한 근로자 건강진단 안내문 내용중 근로자 건강진단실시 결과 당해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 의사가 소견으로 제시한 사후관리조치를 사업주가 실시하지 아니한 때의(벌칙조항 생략)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의미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에서 정하는 일반·특수건강진단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며(단, 채용시건강진단의 경우는 같은규칙 제105조 제2항의 의거 사후관리 의무는 없는 것임)

2. 같은이유로 사업주는 일반·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모두에 대하여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른 추적검사 등 사후관리 책임이 있는 것임(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5항).

